G - 33 - 2012

식음료 제조업의 재해 예방에 관한 기술지침

2012. 5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○ 작성자 : 대한기계학회 서상호

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

○ 제·개정 경과

- 2010년 8월 산업안전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2012년 5월 산업안전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- 관련규격 및 자료
- Moving food and drink: Manual handling solutions for the food and drink industries, HSE, 2000
- 안전보건기술지침 「산업재해 기록분류에 관한 지침」
- 산업안전보건용어사전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, 2006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5월 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G - 33 - 2012

식음료 제조업의 재해 예방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식음료 제조 과정 시의 유해위험요소와 이에 대한 예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사고와 질병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식음료품 제조 사업장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"사일로(Silo)"란 분체의 저장에 활용되는 저장조의 일종이다.
- (나) "dB(A)(청감 보정 데시벨, A-weighted decibel)"란 소리에 대하여 인간의 청각에 좀 더 가깝게 그 레벨을 표현하기 위한 한 방법을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업무상 사고의 유발 요인

G - 33 - 2012

- (1) 추락(떨어짐)
- (2) 전도(넘어짐)
- (3) 협착(끼임)
- (4) 수작업 및 들어올리기
- (5) 물건과의 충돌(부딪침)
- (6) 운송
- (7) 기계 관련(사일로 출입 시)

5. 업무상 질병의 유형

- (1) 근골격계 질환
- (2) 직업성 피부염
- (3) 직업성 천식
- (4) 소음성 난청
- (5) 직무 스트레스

6. 예방조치 절차

- (1) 유해위험요소 평가 및 예방책
- (2) 안전 검사 방법 및 횟수
- (3) 예방 및 보호조치의 실행 및 평가 적임 관리자

G - 33 - 2012

- (4) 업무상 질병에 대한 모니터링
- (5)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 규정
- (6) 실무자에 대한 훈련
- (7) 검사와 모니터링, 질병으로 인한 결근, 재해 등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활용한 대응조치 실행
- (8) 필요한 기계장치 및 장비, 자재의 구입
- (9) 세부 위험요소 검토
- (10) 응급상황, 유지 및 수리에 관한 기준 마련 및 대응
- (11)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참여하는 협의기구 조직 및 운영
- (12) 사고 및 질병치료 후 복직 절차와 훈련기준 마련
- (13) 전반적인 위험요소 관리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

7. 식음료 산업부문별 유해위험요소

- (1) 곡물, 분말, 동물사료
 - (가) 수작업 및 들어올리기, 특히 자루 옮기기
 - (나) 사다리, 계단 그리고 차량 등에서의 추락
 - (다) 장애물 혹은 울퉁불퉁한 바닥표면에 의한 걸림, 미끄러짐에 의한 넘어짐

- (라) 유해물질에의 노출
- (마) 스크류 컨베이어, 로터리 밸브, 믹서기 등 기계장치의 유지 보수 · 세척 시
- (바) 사일로 출입 시
- (사) 지게차, 트레일러 등 운송수단 이용 시
- (2) 빵, 케이크, 비스킷
- (가) 젖어 있거나 오염된 바닥에서의 미끄러짐
- (나) 수작업 및 들어올리기 특히 무거운 물품일 경우
- (다) 물건에 타격 당할 시
- (라) 컨베이어, 포장기계, 분쇄기 등 기계장치 이용 시
- (마) 지게차 등 이동수단 이용 시
- (3) 육류, 가금류, 어패류
- (가) 칼 등 도구와 물건의 날카로운 부분에 접촉하거나 베임
- (나) 수작업 및 들어올리기 특히 무거운 대상을 다룰 시
- (다) 띠톱, 컨베이어, 포장 기계류 등
- (라) 지게차 등 이동수단 이용 시
- (4) 밀크, 치즈
- (가) 수작업 및 들어올리기 작업, 특히 반복 들어올리기 작업 시

- (나) 젖은 바닥에서의 미끄러짐
- (다) 낙하물에 의한 충격 및 수작업 도구에 타격당할 시
- (라) 세척제 등 유해물질, 증기, 뜨거운 물 등에 노출 시
- (마) 사다리, 탱크, 계단, 차량 등에서의 추락
- (바) 탱크로리 및 지게차 등 이동수단 이용 시
- (사) 컨베이어, 포장기계 등 기계장치 이용 시
- (5) 과일, 채소
- (가) 수작업 및 들어올리기 작업, 특히 반복적인 들어올리기 작업 및 박스 이 동 그리고 날카로운 모서리 접촉 시
- (나) 젖은 바닥에서의 미끄러짐
- (다) 낙하물에 의한 충격 포장재 및 수공구 등
- (라) 사다리, 작업발판, 계단, 차량 등에서의 추락
- (마) 고정되어 있거나 이동하는 물체에 충돌
- (바) 지게차 등 이동장치 이용 시
- (6) 초콜릿, 설탕 과자류
- (가) 수작업 및 들어올리기 작업 시
- (나) 젖어있거나 오염된 바닥에서의 미끄러짐
- (다) 낙하물에 의한 충격 포장재 및 수공구

G - 33 - 2012

- (라) 고정되어 있거나 이동하는 물체에 충돌
- (마) 컨베이어 혹은 포장기계 사용 시
- (바) 태우는 물건 혹은 오염물질 등 유해물질과 고온물질에의 노출
- (7) 맥주, 주류, 음료수
- (가) 수작업 및 들어올리기, 특히 주류/음료 상자 및 술통 작업 시
- (나) 젖은 바닥에서의 미끄러짐
- (다) 주류/음료 상자 및 술통과 같은 낙하물에 충격 당할 시
- (라) 사다리, 작업발판, 계단 및 차량에서 추락 시
- (마) 세척제 및 고온의 액체에 노출 시
- (바) 지게차 등 이동수단 이용 시

8. 업무상 사고 위험요소 관리방안

- (1) 운송 시 위험요소 관리방안
- (가) 보행통로와 차량 이동로의 명확한 구분
- (나) 역주행 방지 시스템 구축
- (다) 지게차 운전자 교육
- (라) 적재용 트럭의 안전한 작업발판 확보

- (마) 탱크 꼭대기 및 곡물 이송차량 접근 차단
- (바) 트레일러의 차량 뒷문 잠금
- (사) 탱크로리의 기울어짐 방지 및 트레일러 과회전 금지
- (2) 추락 방지 방안
- (가) 사다리, 계단, 차량 등에 대한 접근 상황 계획 수립
- (나) 올바른 접근방법 훈련
- (다) 부서지기 쉬운 자재로 된 지붕 확인과 사다리 및 계단의 점검
- (라) 물건 및 도구 운반 시 안전한 이동을 위한 개인보호구(안전대 등) 확보
- (3) 사일로 등 폐쇄 공간 출입 시 위험요소 관리방안
- (가) 사일로는 자동으로 청소가 가능하고, 저장 물질의 운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.
- (나) 필요 시 진동방지패드를 설치하고, 저장물질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시 스템을 갖춘다.
- (다) 저장물질이 채워져 있을 때는 내부로의 출입을 금한다.
- (라) 불필요한 출입을 삼가도록 원격조정 청소장치와 개방장치를 구축한다.
- (4) 미끄러짐 방지 방안
- (가) 미끄러짐 유발요인 확인
- (나) 미끄러짐 유발요인 제거
 - ① 효과적인 청소방법 구축

- ② 바닥표면이 적절히 거칠고 건조 상태 유지
- ③ 적절한 조명과 필요한 안전보건표지
- ④ 적절한 바닥상태 미확보 시 물품이동 금지
- (5) 협착 방지 방안
- (가) 협착 유발요인 확인
- (나) 협착 유발요인 제거
 - ① 협착 위험장소 출입제한
 - ② 면장갑 착용 금지
 - ③ 포장 기계 혹은 분쇄기의 구동부 덮개 확인
 - ④ 기계 청소 및 점검 수리시 전원차단 후 실행
 - ⑤ 컨베이어 가동 중 청소 등 금지
- (6) 컨베이어와 포장기계 등 모든 기계장치가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적합한지, 안전한 사용상태 확인 및 점검은 필수적이다.
- (7) 대부분의 상해 및 통증은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들어 올리거나 이송하는 작업에서 기인한다. 따라서 이러한 수작업은 최소한으로 억제하고, 대체 장비 사용을 확대하며, 그 횟수와 정도의 적절성을 점검하여 기준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- (8) 낙하물과 칼 등 수작업 시 사용하는 도구도 상해의 주요 요인이므로, 낙하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고, 수작업 도구의 사용과 보관에 관한 안전수칙을 마련하여야 한다.

G - 33 - 2012

9. 업무상 질병 유해요소 관리방안

- (1) 주요 유해요소
 - (가) 근골격계질환 작업과 관련된 손목, 팔 등의 건강장해
 - (나) 직무 스트레스 주로 열악한 작업조직에 의해서 유발
 - (다) 직업성 천식제빵 및 곡물 분진의 흡입에 의해서 유발
 - (라) 직업성 피부염 오염물질과의 접촉 및 세안 등 불량한 위생 상태에서 유발
 - (마) 비염제빵 및 곡물, 향료 등과 같은 민감성 분진에 의해 유발
 - (바) 소음성 난청 소음수준이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곳에서의 작업 시 유발
- (2) 관리방안
- (가) 사업장 내의 위생적 환경을 조성한다.
- (나) 신체적 통증과 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작업의 정도와 횟수를 점검하며, 요구되거나 권장되는 최소 기준 이하를 준수하도록 한다.
- (다)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통해 재해 유발요인을 알리고 숙지하도록 한다.

- (라) 정기적인 점검과 유해요소 평가를 통해 사전에 유해요소를 제거한다.
- (마) 식음료 제조, 배송과정의 사고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보건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.